

# 〈弘文館志〉 解題

權 泰 櫨\*

《弘文館志》는 弘文館의 沿革 編制 職能 故事 등을 正祖 즉위 초년에 정리·편찬한 책이다. 조선조 成宗 9년에 集賢殿의 후신으로 藝文館에서 分立된<sup>(1)</sup> 이후 후기에 이르기까지 朝廷의 정치에는 물론 經學과 文風에 바탕을 둔 유교문화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왔던 弘文館의 모습이 이 시기에 이르러 奎章閣의 設立과 관련되어 정리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家門의 명예는 물론 개인의 실제적인 벼슬길을 보장하는 清要職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말해지고 있는 만큼 弘文館의 실제적인 政治的 기능이나, 朝鮮 儒敎文化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歷史的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본서를 영인하여 수록하는 뜻은 바로 그러한 연구를 촉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길잡이가 되어 줄 學界의 업적이 거의 없는 실정인어서 弘文館연구에 좌표를 주는 본격적인 해제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다. 그러므로 본 해제는 다만 弘文館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 다음 몇가지 異本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 I.

弘文館의 주요 임무는 王家의 經籍을 管掌하고, 文翰을 다스리며, 王의 顧問에 응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後二者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었으니,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弘文館員은 知製敎를 겸임하고 또 經筵官을 例兼하였던 것이다. 즉 侍從으로서 항상 王의 측근에 있으면서 朝政의 得失을 論陳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弘文館이 司憲府·司諫院과 더불어 言論의 三司라고 불리는 까닭이다.<sup>(2)</sup> 專制君主의 侍從으로서 經筵에서 王에게 儒敎經典을 進講하고 臺諫보다 우위에 서서 時事를 論陳하는 弘文館의 성격은 바로 世宗朝의 集賢殿의 職能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는데 실제로 홍문관의 職制는 집현전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다. 儒敎的 文治主義의 조선사회에 있어 이러한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專任講師

(1) 崔承熙, 1970. 〈弘文館의 成立經緯〉 《韓國史研究》 5 및 〈弘文錄考〉 《大邱史學》 15·16合輯, 1978 참조.

(2) 崔承熙, 上揭論文 및 崔南善, 1948, 《朝鮮常議問答》 〈制度篇〉 東明社, pp. 35-37 참조.

홍문관직은 淸要職으로 손꼽혔으며, 이를 거친 사람은 學問과 德望을 갖춘 사람으로 받아들여져 큰 무리없이 출세의 길을 걷게 마련이었다. 그리하여 그 人選도 매우 신중하여 먼저 文科及第者를 대상으로 홍문관자재의 圈點에 의한 弘文錄을 거쳐 吏曹錄·都堂錄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1478년(成宗 9)에 藝文館에서 分立된 홍문관은 그 설치 이후 조선조의 政治와 유교문화의 형성에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그 정치적 기능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생각 되고 특히 成宗代에는 弘文館員이 例兼하는 經筵의 정치적 비중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sup>(3)</sup> 그러나 다른 官署와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기능이나 역할은 “시대적 배경, 王의 賢否, 政治的 條件 등”<sup>(4)</sup>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형편이다.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미루어 본다면 조선조 중기 이후 士林세력의 성장으로 인한 朝廷內의 政治力學 관계의 변화, 朋黨政治의 전개에 따른 黨派間의 세력다툼으로 그 성격 및 기능에 변화가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러한 黨爭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인 正祖代의 奎章閣의 설치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성격 및 역할의 변화를 강요받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純祖 이후 戚族勢力의 집권, 이를 극복하는 노력으로서의 大院君의 王權強化를 지향하는 움직임 등이 홍문관의 성격변화에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할 바와 같이 高宗年間 大院君 執權시기에 增補·刊行되는 《弘文館志》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식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 자료를 통해서, 또 기존의 관련된 업적을 통해 弘文館이 실제 政治 무대에 어떠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었던가를 극히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대의 朝廷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弘文館에 대해 가장 자주 문제시되었던 것은 弘文錄의 公正性에 관한 것이었다. 弘文錄이 本館錄·吏曹錄·都堂錄을 거쳐 마련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여기에는 쉽게 選錄者의 私意가 개입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弘文錄은 “家門관계, 知面관계, 利害관계”<sup>(5)</sup>에 의해 그 揀選이 不公正해지고, 또 本館錄이 무시되기도 하고, 그 수요에 증감이 생기게도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選錄의 不公正性은 특히 朋黨政治가 전개되면서 그 폐해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論難은 조선후기로 올수록 자주 눈에 띄는 편이다. 한 예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副修撰金東弼 從縣道上書 附陳所懷 有曰 再行新錄 已過四年 而尙未一經本職者 至於七人之多 蓋向來瀛錄(弘文錄; 필자)之流行於舊錄太半未行之前者 已極旣駭 及其再錄也 並與前後被選者而無端束閣 今

(3) 崔承熙, 上揭 〈弘文錄考〉 참조.

(4) 同上, p. 269 참조.

(5) 同上, p. 286 참조.

又以新錄事 猝然煩請 不顧事體 惟以排擯異己 布置私黨爲計 噫 玉署之錄 自治國家公選 初若以不才棄之則已 既錄之後 附加物色 公然斥置 寧有是理哉……<sup>(6)</sup>

이것은 이미 弘文錄에 든 사람으로서 弘文館職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나 되는 형편인데, 다시 새로이 選錄하길 청하니, 이것은 자기와 부류가 다른 자를 배척하고, 私黨은 布置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는 弘文錄의 選錄자체가 불공평했음은 물론, 弘文錄에 들었다 해도 黨派的 利害에 밀려 館職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選錄의 不公正성과 함께 弘文錄 그 數 자체가 늘어나면서 淸室으로서의 弘文館職의 명성도 조선후기로 오면서 점차 퇴색되어 갔던듯하다.

(正祖) 教曰……玉堂則若稽設官之初 則至淸且華 妙選極揀 而挽近以來 其選漸廣 其數漸多……<sup>(7)</sup>

(正祖) 教曰……近來 弘文館凡事 皆不如古……<sup>(8)</sup>

儒敎的 文治主義를 이상으로 하는 조선사회에 있어서 선비적 기풍의 쇠퇴는 심각한 문제였고, 이는 특히 文風振作을 위한 文化政策을 실천코자하는 正祖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正祖는 조선후기로 내려 오면서 그 성격이 변질된 “承政院과 弘文館 대신 內閣(奎章閣)을 別置”<sup>(9)</sup>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장각의 설치에는 당시의 戚族 세력의 王權에 대한 위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親衛勢力양성이라는 正祖의 政治的 腹心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결국 奎章閣은 承政院·弘文館·藝文館·春秋館·司諫院·宗簿寺 등 諸機關의 機能을 併合”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0)</sup> 이렇게 奎章閣이 설치되어 弘文館의 기능을 대신하고, 특히 抄啓文臣制를 통해 舊來의 集賢殿의 후신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면서 弘文館의 기능 및 淸要職으로서의 의미는 쇠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弘文館은 그 기능이 축소된 속에서도 어쨌든 奎章閣과 병존하면서 韓末까지 존속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 시기의 흥문관의 성격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弘文館은 甲午改革時 經筵廳과 통합되어 經筵院이 되고, 다시 宮內部 소속의 弘文館으로 개칭되었다가 1907년의 官制改革에서 奎章閣에 併合되면서 歷史上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 II.

《弘文館志》에는 刊本 및 筆寫本을 합해 세가지 異本이 있다. 즉 (1) 崔昌大 私撰의 筆寫

(6) 肅宗實錄, 卷 63, 45年 己亥 2月 戊辰條.

(7) 正祖實錄 卷 13, 6年 壬寅 5月 乙丑條.

(8) 正祖實錄 卷 13, 6年 壬寅 6月 丁丑條.

(9) 鄭玉子, 1981, 〈奎章閣 抄啓文臣 研究〉《奎章閣》4 p. 4 참조.

(10) 同上論文 참조.

本(奎 No. 3127), (2) 正祖 8年 刊의 壬辰字本(奎 No. 1816 外 複本이 數種 있음), (3) 高宗 7年 刊의 芸閣活字本(奎 No. 4747外 複本 數種)이 바로 그것이다. 이 三者의 關係를 간단히 서술하면 (2)는 (1)을 바탕으로 再編輯한 것이며, (3)은 (2)에 변화된 사항을 첨가하거나 刪削한 增補本이다.

먼저 崔昌大撰의 筆寫本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것은 崔昌大가 撰하고, 다시 李宗成이 增補한 것이다. 그 편찬이 어느 해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불명하나 그의 생몰년(顯宗 10년~肅宗 46년, 1669~1720)으로 보아 肅宗 재위기간 후반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增補는 본서 후반부의 <館中故實>에 대한 증보가 1744년(英祖 20) 겨울에 실시된 것으로 보아, 本文에 대한 증보도 대개 이를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撰者인 崔昌大는 崔錫鼎의 아들로 문장과 글씨에 모두 능해 당시 士林의 촉망을 받던 인물이라고 한다.

崔昌大 私撰인 본서의 특징은 바로 <館中故實>에 있다고 하겠다. 上下 2冊 合 90葉餘 중 이 부분이 65葉으로 全體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崔昌大에 이어 李宗城이 增補한 것인데, 여기에 다시 後人이 계속하여 증보한 결과이다. 그 내용은 弘文館에 관련된 글자 그대로의 故事를 모아 놓은 것으로 王과 館員 사이의 일화, 王의 賜物, 館員의 勤務에 얽힌 이야기 등을 이책 저책에서 모아 수록한 것이다. 시대가 뒤로 내려 올수록 관련기사의 件數가 줄어들며, 마지막 기사는 1808년(純祖 8)의 것이다. <館中故實>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弘文館 全般에 관한 것으로, 그 대개가 正祖年間의 刊本에 옮겨지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의 分類·排列이 요령있게 된 것은 아니다.

正祖 8년(1784년)의 甲辰字本은 바로 이 필사본을 바탕으로 그 次序를 다시 정하고, 항목의 명칭을 바꾸고, 유사항목을 통합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첨가된 항목은 거의 없으니 대체로 필사본을 바탕으로 한 再編輯이 주된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구체적인 사항의 서술에 있어서도 앞의 필사본의 글귀가 그대로 轉載되어 있다. 그리고 筆寫本에 있어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館中故實>은 65葉에서 12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제 正祖 8년의 刊本이 어떻게 앞선 筆寫本을 재편집했는가를 다음의 <表 1>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국 正祖 8年刊의 甲辰字本은 崔昌大의 筆寫本을 완전히 재정리한 것으로, 훨씬 더 체계적이고, 弘文館의 성격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개인의 사적 저술이 아닌 官撰으로 보다 格式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 甲辰字本은 正祖 8년에 간행되었는데 하나 주목할 사실은 《奎章閣志》도 이해에 같이 出刊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 앞에는 正祖의 御製序文을 실고 뒤에는 金鍾秀의 跋

〈表 1〉 崔昌大 筆寫本과 正祖 8年 甲辰字本の 編次 비교

崔昌大 筆寫本(甲)	正 祖 甲 辰 字 本		비 고
	甲辰字本の 항목	재편된 (甲)항목의 번호	
(1) 目 錄	(가) 御製弘文館志序		
(2) 引 用 書 目	(나) 弘文館志 目錄		
(3) 設官沿革 第一	(다) 建置 第一 沿革	(3)의 일부, (4)	
(4) 官舍變置 第二	(라) 職官 第二		
(5) 稱號 第三	差除 附率屬	(3)의 일부, (6)	
(6) 率屬 第四	(마) 進講 第三		
(7) 什物 第五	① 視事取 附頌稟	(8)-①	
(8) 式例 第六	② 朝講 附晝講· 夕講	(8)-②③④	
① 視事取稟式	③ 召對 附夜對	(8)-⑤⑥	
② 朝講式	④ 進講書冊 附講冊內入	(8)-⑱⑳㉑	
③ 晝講式	(바) 館規 第四		
④ 夕講式	① 代撰 附本館講製 文臣月課	(8)-㉒	代撰, 本館講製는 (甲)에 에는 없음.
⑤ 召對式	② 故事 附博考	(8)-⑯⑰	
⑥ 夜對式	③ 豹直	(8)-⑧⑨	
⑦ 新錄式	④ 會圈	(8)-⑦	
⑧ 入番式	⑤ 議設	(8)-㉓	
⑨ 司員相遊式	⑥ 殿最		殿最是 (甲)에 해당 항 목이 없음.
⑩ 陳劄式	⑦ 劄疏 附草記· 進箋	(8)-⑩⑫	劄疏에는 (甲)에 없는 한 항목이 추가 됨.
⑪ 處置式	⑧ 講對	(8)-⑬⑭⑮	
⑫ 草記式	附伏閣·合辭		
⑬ 講對式	⑨ 處置	(8)-⑪	
⑭ 合司式	⑩ 起居附參班	(8)-㉔㉕	
⑮ 伏閣式	雜式	⑪	(甲)에 없는 항목이 추 가 됨.
⑯ 故事式	折受及奴婢什物		
⑰ 博故事	(사) 書籍 第五		
⑱ 冊懸讀校正式			
⑲ 進講書冊式			
⑳ 繼講冊定奪式			
㉑ 藏書式			
㉒ 書冊貿易式			
㉓ 進講冊內入式			

崔昌大 筆寫本(甲)	正 祖 甲 辰 字 本		비 고
	甲辰字本の 항목	재편된 (甲)항목의 번호	
書册內入式 ⑳ 書册謄書內入式 ㉑ 圖書內入式 ㉒ 議證式 ㉓ 月課式 ㉔ 問安式 ㉕ 舉動進參式 (9) 前任名氏 第七 (10) 館中故實	藏書 附懸讀 校正・謄書及圖 書內入  (아) 事實 第六 紀續  (자) 跋	(8) - ⑬ ㉑ ㉒ ㉓ ㉕  (10)	

이 붙어 있다. 이는 兩書가 한 구상 속에서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편찬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奎章閣의 설치 및 운영 역시 弘文館과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시기에 弘文館의 명에는 퇴색하고 있었고, 奎章閣은 국왕의 의미심장한 비호하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奎章閣志》가 새로 등장하는 규장각의 설치법 또는 규정을 定한 冊이라면,<sup>(11)</sup> 본서는 이제 그 기능이 축소될 운명에 처한 홍문관의 이왕의 기능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찬술된 것이 아닐까 한다.

《弘文館志》는 다시 한번 增補・改刊되는데, 그것은 1870년(高宗 7)의 일이었다. 이 본은, 앞의 甲辰字本과 항목을 비교하면 〈會圈〉이 〈館錄〉으로 바뀌고, 앞서 〈筭疏〉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進箋〉 항목이 떨어져 나와 독립되었으며, 책의 끄트머리에 다시 金炳學의 跋이 추가된 것 외에 외형적인 변화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差除〉 항목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모두 16개 조항이 增補되고 있으며, 앞에 없던 〈雜職〉 조항이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개 高宗 재위 초년, 大院君 執政시기에 들어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문란해진 정치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勢道政治를 청산하고 王權強化를 지향하는 이 시기의 정치적 움직임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증보된 조항들은 대개 弘文館員의 임명 要件과 겸임에 관한 것들인데, 규장각・승정원・성균관과의 연관하에 논의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 중에서 1865년(高宗 2) 11월의 조치로서 副提學을 內閣의 直提學例에 따라 常設케 하고, 典翰을 內閣 直閣例에 따라 會圈케 하며, 直提學은 藝文館直提學例에 따라 都承旨가 例兼케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듯하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純祖~哲宗在位年間の 이들 관서들의 상대적 비중의 실상을 파악치 못하는 한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11) 李離和, 1979, <奎章閣小考> 《奎章閣》 3 p. 153.

것이기는 하나, 金炳學의 跋에서 알 수 있듯이, 弘文館의 지위를 높이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인 듯하다.<sup>(12)</sup> 그 밖의 증보된 조항들은 사소한 것들로 큰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닌 듯하다.

### Ⅲ.

본서의 구성은 앞의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보아 建置・職官・進講・館規・事實의 6章과 19개의 目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館規에 11개의 目, 進講에 4개의 目이 배당되어 있어 본서의 中心을 이루고 있다. 進講 부분은 弘文館의 주요기능의 하나인 經筵의 절차에 관한 세세한 규정들이고, 館規는 弘文館員의 선발, 근무, 考課, 業務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그밖의 것은 이에 부수되는 내용의 것들이라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弘文館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規定들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한 뼈대가 바로 本書에서 規定되고 있는 듯하다.

×            ×            ×            ×

여기에 축소・영인하여 부록한 것은 正祖 8년에 간행된 甲辰字本이다.

(12) 《弘文館志》(奎 No. 4747) 「跋」(金炳學 撰) 참조.

如其績苟能立志乎此則有所準的而能究  
 其實有所榜樣而能就其績臣敢發揮 聖  
 祖徽言飭勵學士大夫之居是館者大匡輔  
 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  
 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臣 金炳學拜  
 手稽首謹跋

弘文館志

跋

臣